

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 안 이 유

-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,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·유통·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(안 제2조제8호)
- 나.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정비(안 제6조, 별표 1, 별표 2)
- 다.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·유통·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6조제8항)
- 라. 용어 및 인용사항 등 정비(안 제7조의2, 제9조, 제9조의3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제17조, 제20조, 제23조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5호서식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합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배출기준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·규격별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,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·유통·판매 대행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.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2조제8호 및 별표 2는 폐농약·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배출기준을 마련하고,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변화된 생활 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안 제16조제8항은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종량제 관련 물품의 제작·유통·판매를 지방공사·공단 또는 출자·출연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다만 대행 추진 시에는 현행 운영방식과의 비용·인력 및 효율성을 충분히 비교하고, 대행기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·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